

## 「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1년 03월 03일 지광천 의원이 발의하고, 2021년 03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# 1. 제안이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협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군수, 의료인, 군민의 각각의 책무 (안 제3조)
- 나. 질병관리청장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다. 임시예방접종의 무료예방접종대상자 규정 및 재정지원의 근거마련(안 제5조)
- 라.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(안 제6조)
- 마. 군수의 감염병 예방·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, 홍보 (안 제7조)
- 바. 신속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해 관련 유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위 관련 근거법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지자체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

○ 본칙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제3항의 “질병관리청장의 기본계획에 따른 군수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“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사항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
안 제5조에서는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“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실시의무” 법 제25조제2항의 “군수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“함에 따른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  
특히,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를 위해서는 조례 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 한 바 의원발의로 무료접종 대상자를 선정 자치법규 규정함은 의미 있다 판단됩니다.

안 제6조에서는 법 제4조제2항 “지자체의 사업 수행의무” 중 하나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의무에 따라 역학조사원과 감염병전문가 양성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교육 이수를 규정하였으며,

끝으로, 안 제8조에서는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, 지역 의료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 지자체들은 향후 발생 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“**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**”를 발 빠르게 마련해 왔으며, 전국적 입법례는 130여개 지자체에서 제정 실시되고 있고 이중 90%가 2020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바 있습니다.. (강원도 제정 시·군-동해, 양양, 영월, 원주, 춘천, 홍천)

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며 우리군의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고,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인 만큼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.

#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」